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9호서식] <개정 2022. 3. 30.>

정부24(www.gov.kr)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[ ] 사업 / [ ] 저장소 사용 [ ]개시 / [ ]중단 / [ ]폐지 / [ ]재개 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즉시

신 고 인	상호	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
	사무소 소재지 (전화번호:)	

허가 (신고·등록) 사항	허가(신고·등록)종류
	허가(신고·등록)번호
	허가(신고·등록)연월일

세부내용	개시·중단·폐지·재개 연월일
	개시·중단·폐지·재개 사유

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(저장소 사용)의 개시(중단·폐지·재개)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사업 또는 저장소의 폐지 시에는 가스설비 안의 고압가스 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
210㎜×297㎜(백상지 80g/㎡)